

입 · 퇴소 관리 규정

(본 장의 목적)

본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1·2·3등급 이용자, 또는 일반입소자에 대해서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소절차 및 정보를 공개하여 입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입소 계약)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요양원에 대해 이용자 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1. 계약 유효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요양원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14일까지 이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갱신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도록 한다.
3. 전액 이용료 부담자는 전 항의 내용에 예외로 한다.

(계약자의 의무)

요양원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요양원'의 의무

- ①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이용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외)

2. '이용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지급의무
- ②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③ 요양원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 ⑤ 기타 요양원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 ② 이용자가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제반사항에 관한 책임의무

(입소 기간)

1. 입소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되, 가정에 인계, 자진퇴소, 타 시설로의 전원, 사망 시까지로 한다.
2. 이용자가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양원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소를 권유하며, 10일 후 재입소를 위한 대기기간을 입원 후 1개월까지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이용자가 요양원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요양원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 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보호자가 이용자들 앞에서 요양원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동이나 난동을 부렸을 때

요양원은 상기조항의 계약해지 요건 해당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